

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		
부과대상 시설물	시설명	남부통지서 코드번호		
	소재지			

소유권 이전 내용

전 소유자 성명	생년월일	주 소(연락처)	양도일	확인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시설물 취득자)

(서명 또는 인)

관 할 시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양도증명서(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물 등기사항증명서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-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(매년 7월 31일)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- 양도일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양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